#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509

제안연월일: 2025. 2.

제 안 자: 환경노동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 과	
환경기술 및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	
환경산업 지원법	પો જે હો	2024 2 14	회의(2024. 9. 9.) 상정 후 제안설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2024. 6. 14.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제2200499호)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환경기술 및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	
환경산업 지원법	りづる	0004 0 07	회의(2024. 11. 21.) 상정 후 제안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2024. 9. 27.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제2204413호)			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환경기술 및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환	
환경산업 지원법	6) Q Q		' ' ' ' <del>'</del> ' ' ' '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제2206134호)			('25. 2. 13.)	

나.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5. 2. 18.)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5. 2. 20.)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위기 시대 녹색기술의 개발과 녹색산업의 육성은 전세계적인 호름으로 우리 녹색산업의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전문공사업·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수정하며,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부적정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등인증제도와 관련한 법률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기술의 정의 개념을 확대하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을 신설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 · 신설

하는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등).

- 다.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수정함(안 제15조,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6제3항·제4항신설 등).
- 라.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의 2 신설).
- 마.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요건 등 인증 관련 규정 신설· 정비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등 인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2 조의2 등).
- 바.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 위탁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31조).

### 법률 제 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을 "개발, 보급을 지원"으로,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을 "환경을 관리·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 또는 이를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의 예방·저 감·관리·처리·감시·측정 또는 분석에 관한 기술
  -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술
  -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 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 화대응 기술

- 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 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물관리기술
- 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
- 아.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기술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관리·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 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다. 그 밖에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환경의 관리·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3의2. "사업화"란 개발된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생산 또는 공급·제공하거나 이 과정에서 관련된 환경기술 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기술의 개발·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실용화"를 "사업화"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환경산업체에게 기술개발,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 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 2. 그 밖에 환경산업에 투자하거나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또는 회사
- ⑦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청년 채용 실적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정부는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를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창업 자금의 지원 및 융자
- 2. 창업 · 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의3(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①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사업화 자금의 지원 및 융자
  - 2. 사업화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 3.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
  - 4. 산・학・연 환경기술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 5. 환경기술의 융합 촉진 지원
  -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정부는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이로 정하는 자를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다.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검증, 시범사업 및 환경기술 실용화"를 "기술검증 또는 시범사업"으로, "제6조제3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

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 2.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 개발사업 지원
- 3.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 4. 제13조의4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제2항 전단 중 "관련 공공기관"을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을 "환경산업체는 환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민·관 협력의 추진
- 5. 환경산업체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산업"을 "환경산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개최"를 "개최 등 해외 홍보 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원"을 "역량 강화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설치하는 해외 현지 사무소의 운영 지원

6. 환경산업체의 해외 수주 지원

제15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① 시·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 자에게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도지 사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 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상법」에 따른 회사"를 "자"로, "회사는"을 "환경컨설팅회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실용화"를 "사업화"로 한다.

제16조의6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 컨설팅회사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되는 재료 및 제품의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이를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실과 다른 표시 또는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통보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의 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로 인증 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 ②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 1.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충족한 경우
- 2. 환경성적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된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의2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3년 이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2.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데 있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제2호 중 "제6조제3항, 제7조제6항, 제10조제2항"을 "제6조제2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제6항,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를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

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위탁할 수 있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 또는 단체"를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관"을 "법인"으로 한다.

제33조제1호 중 "실용화한"을 "환경기술을 우수하게 사업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환경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기법을 도입한 자
- 3. 생산·유통·사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한 자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로 하고,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2. 제24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자 제35조(종전의 제3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종전의 제36조)제1항 본문 중 "제34조나 제35조"를 "제34조부

터 제36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34조나 제35조"를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환경표지 등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그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 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 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 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 한다.
    -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 소 · 처리 기술과 소음 · 진 동 방지 기술

개 정 아

제1조(목적) -----

개발, 보급을 지원-----

-----환경을 관리

•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 1.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목 의 기술 또는 이를 응용하거 나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 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 의 예방 · 저감 · 관리 · 처 리・감시・측정 또는 분석 에 관한 기술
  -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기술
    -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5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이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 (2)
   「악취방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악취
- (3)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 (5)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및 회수(回收) 기술
- 다.자연환경의 보전・복원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 라.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 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 정·분석 기술

- 용에 관한 기술 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
  - 른 기후변화대응 기술
- 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

   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 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관리

   기술
- 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

   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

   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
- 아.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기
   술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
   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 <u>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u> 염방지 기술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 2. (생략)
- 3. "환경산업"이란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

     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

     •예방・최소화・복구 등

     에 필요한 시설・장치 또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나.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 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 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자 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

- 2. (현행과 같음)
-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관리

  ·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
  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

  ·예방·최소화·복구 등
  에 필요한 시설·장치 또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u>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u> 를 제공하는 산업
  - 다. 그 밖에 폐자원에 아이디 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 업 등 환경의 관리·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 · 개선에 기여하는 제품 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다.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산업

라. 그 밖에 환경의 보전 • 관 리 ·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신 설>

4. ~ 7. (생략) <신 설>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 성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3의2. "사업화"란 개발된 환경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 비스를 개발·생산 또는 공급 •제공하거나 이 과정에서 관 련된 환경기술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 7. (현행과 같음)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 경기술의 개발・보급 및 환경 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성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 음)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②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6. (생 략)
- 7.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 8. (생략)
- ③ ~ ⑦ (생 략)
-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① 정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① 정부 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 다.
  - 1.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
  - 2.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출자 (出資)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3.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 4.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의 인증을 받은 자
  - 5.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사업자
  - 6. 환경산업체

- 1. ~ 6. (현행과 같음)
- 8. (현행과 같음)
- ③ ~ ⑦ (현행과 같음)
- 는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 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운영하 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 다)는 그 재원에서 환경산업체 에게 기술개발,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해 필요한 자 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 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

-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 는 전문기관의 육성
- 2. 특허기술의 실용화 사업
- 3. 환경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 인력, 시설, 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 지도
- 4.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 위한 해외 현지 사무소 건립 을 지원하는 사업
- 5. 그 밖에 환경기술의 실용화 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 원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 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 ②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 관에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 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 탁할 수 있다.
  -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에 줄연 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녹색 전환보증계정의 수입·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3.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수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신 설>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 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 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 태조합
- 2. 그 밖에 환경산업에 투자하 거나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 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 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또는 회사
- ⑦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청년 채용 실적 등이 우 수한 환경산업체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의2(환경산업체의 창업 지 원) 정부는 환경산업체의 창업 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 여 환경산업체를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창업 자금의 지원 및 융자
  - 2. 창업 · 경영 컨설팅 및 역량 강화 지원

<신 설>

-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 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의3(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원) ①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게 다음 각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 1. 사업화 자금의 지원 및 융자
  - 2. 사업화·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 3.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
  - 4. 산・학・연 환경기술 공동기

     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

     원
  - 5. 환경기술의 융합 촉진 지원
  -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 7 ~ ⑤ (생 략)

- ⑥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시범사업 및 환경기술 실용화 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로서 환경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 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 ⑦ (생략)
- ·지원) ① (생 략)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

	2	정	부분	는	환	경기	[]술	의	사	.업	화
	를	효	율	적으	으로	. ス	기원	하.	7]	위	하
	여	대	통i	컹 링		.로	정	하듺	=	자	를
	<u>전</u>	문기	]관	<u> </u>	로 -	육성	성 할	수	. O	디	- <u>.</u>
제	7조	:(신	.フ] <del>·</del>	술약	인증	-과	기	술김	검증	-)	1
	~	<b>(5)</b>	(ਨ੍	현 행	과	같	음)				
	6										
									-フ]	술	검
		또									
							_				
							_ <u>_</u>				
		2.			과	간.	은)				
					-1	E	ロノ				
	< ^	}-	세	>							

(7) (현행과 같음)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 ⑥ (생 략)
-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생략)
  -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 환경산업체 또는 환 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 여 우선하여 제13조의4에 따른 이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 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 2.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 개발 사업 지원
  - 3.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 4. 제13조의4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 ③ ~ ⑥ (현행과 같음)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2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예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운영)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3. (생 략) <u><신 설></u>

<신 설>

<u>4.·5.</u> (생 략)

④·⑤(생략)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u>환경산업</u>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운
영) ① <u>환경산업체는 환경산업</u>
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② (현행과 같음)
(3)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외 민·관 협력의 추진
5. 환경산업체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u>6.·7.</u>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①환경산업
체
<u> </u>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학술 회의의 개최
-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자문 및 교육 등의 <u>지원</u>
<신 설>

### ② (생략)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
(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
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1.•2. (현행과 같음)
3
<u>개최 등 해외 홍보 활</u>
<u>동</u>
4. 환경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의3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설
치하는 해외 현지 사무소의
운영 지원_
5
역량강화 지원
6. 환경산업체의 해외 수주 지
 원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u> </u>
사
<u>^\lambda</u>
, <b></b> _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 ④ (생 략)
- ⑤ 시·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5.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u>경우</u> <u><단서</u> <u>신설></u>

6. ~ 9. (생 략) ⑥ (생 략) <u><신 설></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1. ~ 4. (현행과 같음)
5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
로 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
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
<u>다.</u> 6. ~ 9.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베15조의2(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① 시·도지사는 환경전
문공사업자에게 제15조제5항

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영업 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 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 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 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전문 공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 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 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 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 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부

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

-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 출금액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 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 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1 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 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

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

   부장관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

   교통부장관
-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시・도지사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 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15조제5항제 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수 없다.
- <u>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u>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 6. (생략)
- 7. 환경기술의 개발 및 <u>실용화</u> 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 육
- 8. (생략)
- ② (생략)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 록취소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
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
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
록) ①
<b>z</b> }
<del>.</del>
환경컨설팅
회사는
<u> 역기도</u>
•
,
1. ~ 6. (현행과 같음)
7 <u>사업화</u> -
- (5) (3) (3) (4)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
록취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

<신 설>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①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① · ② (생 략) <신 설>

여 환경컨설팅회사를 대상으로 지도 · 점검을 실시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 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되는 재료 및 제품의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이를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 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통 신판매중개자는 사실과 다른 표시 또는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신 설>

<신 설>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 우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 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보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의 개정 및 폐지 등의사유로 인증 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u>장을 신청할 수 있다.</u>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환 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 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 1.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
- 2. 환경성적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된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환경표지 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에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의2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	-------

①

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신 설>

<u>2.</u> ~ <u>5.</u> (생 략)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28조(사후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

1. (현행과 같음)
2.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공
하는데 있어 환경 관련 법령
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3. ~ <u>6.</u> (현행 제2호부터 제5
 호까지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
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3년 이내, 제1항제3호부터 제6
호까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
<del></del>
· 28조(사후관리) ①

등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 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 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1. (생 략)
- 2. 제6조제3항, 제7조제6항, 제1 0조제2항 및 제13조의4제2항 에 따라 비용을 지원 · 보조 · 융자받은 자
- ② ~ ④ (생 략)
-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환경연구 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 다.
  -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 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5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 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의2.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과 기술검증 업무, 제7조의2

,
1. (현행과 같음)
2.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제6항, 제10조제5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u>소속기관</u>
<u>.</u>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 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 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기 수 있다. 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사후평가에 관한 업 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의3. 제7조의5에 따른 환경기 술 성능의 확인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의4.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 경산업체의 지정에 관한 업 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의5.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ㆍ정보의 전산 화 및 관리에 관한 업무: 한 국환경산업기술원
- 1의6.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실 태조사에 관한 업무: 「통계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 성지정기관
- 1의7. 제10조의3에 따른 녹색경 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 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한 국환경산업기술원
- 2.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 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3.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 (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4.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4의2.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조사에 관한 업무:한국환경산업기술원
- 4의3.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의4. 제16조의14에 따른 표시 한 광고의 사전 검토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5. 제17조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 제18조와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업무: 환경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단체 중 대단체

- 6. 제21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기관 또는 단체</u>의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본다.
  - 1. 2. (생략)
  - 3.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u>기관</u>또는 단체
- 제33조(포상)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
  - 환경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u>실용화한</u>
     자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두	브윈
의제)				
	<u>7</u>	기관,	법인	또
<u>는 단체</u>				
			·,	
1.・2. (현형				
3				
			법	<u>인</u> _
300.5()				
제33조(포상)				
				•
1				
ㅇ스퀴 게				宣
<u>우수하게</u>	사업의	<u> </u>	_	

의 도입・실용화와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 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 적인 제품을 생산한 자 <신 설>

3. (생략) <신 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35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2.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기법 2. 환경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 스의 설계기법을 도입한 자
  - 3.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 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한 자

4. (현행 제3호와 같음)

-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 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지 아 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 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 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 한 광고를 한 자
  - 2. 제24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 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자

<u>세35소(</u> [밀식]	 	 	 	

- 1. ~ 4의2. (생 략)
- 5.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 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 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6. 제24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 | <삭 제> 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자 제35조(벌칙) 제15조제1항과 제2 제36조(벌칙) (현행 제35조와 같 항을 위반하여 환경전문공사업 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 또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 제 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 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34조나 제35조의 위반행 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

1. ~ 4의2. (현행과 같음) <삭 제>

유)

<u>에37조</u> (양벌규정) ①
<u>제34</u> 조부터 제36조까지

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 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나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제37조</u>(과태료) (생 략)

,
②
제34조부터 제36조
<u>까지</u>
<u>제38조</u> (과태료) (현행 제37조와
같음)